

	<h2 style="margin: 0;">초빙교원인사규정</h2>	규정번호	3-3-17
		제정일자	2012.03.01.
		개정일자	2024.06.01.
		개정차수	2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초빙교원의 자격,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초빙교원이라 함은 국가기관, 연구기관,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 각 분야에서 근무한 인사 중 실험·실습, 실기 등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 및 특수한 교과의 교육을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나 산업체 근무경력 등이 우수한 자로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해당분야 직종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2. 학생지도 및 교수 능력이 있는 자

제4조(임용절차) ① 초빙교원의 임용은 소속 학과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임용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학과장 추천서 1부
2. 임용지원서 1부
3. 학력(성적 및 졸업)증명서 각 1부
4. 경력증명서 각 1부
5. 자격증 사본(해당자) 각 1부
6. 소속기관장 동의서(해당자) 각 1부

제5조(임용기간) ①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재임용은 [별표1] 초빙교원 재임용 평정표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초빙교원은 임용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.

1. [별표3] 초빙교원 강의총실도평가표의 ①의 평가점수가 36점미만이거나, ②의 평가점수가 20점미만인 경우
2. 대학 초빙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3.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

③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제외자는 별도의 해임발령 없이 당연 퇴직한다.

제6조(복무) ① 초빙교원은 대학의 교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초빙교원의 책임 강의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, 책임강의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강사료를 지급한다.

③ 초빙교원의 임무와 관련한 복무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지휘, 감독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보수) 초빙교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, 방법,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임용인원의 제한)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을 합하여 법정교원 정원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임용하되 그 인원은 전임교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